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 제공 근거 신설〉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등 제공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 제공 근거 신설

-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각종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 ----- ----- ----- ----- ----- ----- ----- ----- ----- ----- -----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 8. (생략) ② ~ ⑥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²⁾에 따라 보험료등에 대한 납부 의무자가 보험료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않은 경우

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 보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³⁾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 체납자의 재산조회가 불가능하여 계좌를 특정해 압류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포괄적 압류처분이 관행화⁴⁾되어 있음.

□ 이에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압류대상 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취약계층 체납자의 경우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⁵⁾에 따라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이 포함된

3)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18개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 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함(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채납자가 계좌잔액이 소액임을 증빙할 경우 해당 예금채권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용직 등 생계곤란자인 채납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동이 잦아 일반우편 송달만으로는 당사자 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채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2023.11.6.)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에 대해 지적하면서, 압류예정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됨에 따라 채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액예금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채납 관련 압류처분 통보·안내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등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납자의 계좌별 잔고를 파악하여 압류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압류대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채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에 보험료등의 채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채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⁶⁾에 따라 전 국민이 강제가입 대상이 되므로 그 가입 여부를 국민이 사실상 선택할 수 없고, 보험료등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 및 2023년 12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총 93.6만 가구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약 76.6%를 차지한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채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이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한 예외사유 확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래정보등 제공 예외사유의 확대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취지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6)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7) <최근 3년간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체납액 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연소득 (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구 수	체납액	가구 수	체납액	가구 수	체납액
계	993	17,026	928	15,401	936	15,088
100 이하	665	9,654	587	8,059	579	7,777
100 초과 300 이하	80	1,216	83	1,174	83	1,069
300 초과 500 이하	53	887	53	827	55	775
500 초과 1천 이하	81	1,592	82	1,487	87	1,378
1천 초과 5천 이하	104	2,974	108	2,912	115	2,874
5천 초과 1억 이하	8	421	10	499	11	595
1억 초과	3	282	5	443	5	619

주: 6개월 이상 자격유지, 누적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 법의 입법목적이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⁸⁾으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은 명의인의 동의를 전제로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한 예외 사유의 확대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압류처분으로 체납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 제4조제2항¹⁰⁾은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 시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납자의 금융재산과 관련된 특정 점포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포괄적 압류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한 제4조제2항 단서에 안 제4조제1항제2호의2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함.

□ 한편, 은행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1월간의 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6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 동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전 국민의 생계비계좌가 압류조치로부터 보호되어 취약계층 채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므로 「금융실명법」을 별도로 개정할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8